

추가 : 김성은 분석관 요구자료 중 재활공학연구소의 외부위촉연구원의 용역수입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답변이 미흡함. 좀더 세부적으로 쓸필요가 있음.

□ 질의사항 답변: 수지차 보전기관으로서 자체수입 확대 방안

- (자체수입 현황) 자체수입은 외부국책과제 연구용역, 재활보조기구 제작보급 수입(산재급여 품목, 상용화 품목), 의료기기 시험검사 수수료 등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'14년	'15년	'16년
자체 수입 합계		5,067	5,930	5,255
- 외부국책과제 연구용역		1,984	2,680	2,202
-재활보조기구 제작 보급	산재급여 품목	2,794	2,933	2,762
	상용화 품목	166	163	140
- 의료기기 시험검사 수수료 등		123	154	151

- (설립목적 및 문제점) 산재장해인에 대한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을 통한 제작보급 및 훈련기법 연구로 직업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수익 연구기관으로
- 수입사업에 의존도가 커질 경우 공공성 강화라는 본연의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연구수행어 수입 증대에 한계
 - (외부국책과제 연구용역 수입)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부처의 연구개발정책 및 예산배분계획에 따라 연구용역 수주 금액의 변동성이 큼
 - (재활보조기구 제작·보급 수입) 고가의 외산 재활보조기구를 국산화하여 저렴하게 보급하고 있어 수익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또한 민간 재활보조기구 판매업체와 판매 경쟁하는 상용화 수입도 감소 추세
 - (의료기기 시험검사 수수료) 건강보험의 자체 검사시설 확보와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의 난립으로 향후 지속 감소 예상
- (수입 증대방안) 외부국책과제 연구용역 수입비중은 감소*시키고 산재보험시설로서 공공성 및 연구기능 강화를 통하여 재활보조기구 수입증대 추진

- * 기존 수행중인 연구과제는 연차별로 완료하고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신규 국책연구는 지양하여 연차별로 수행건수 지속 감소를 통하여 수입비중 하향 추진

● 산재보험 시설로서의 공공성 및 연구기능 강화 계획 수립

- 기존 수익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공학연구소의 산재보험 시설로서의 기능을 재정비하고, 산재장해인의 직업재활 관련 연구 강화 및 산재직영병원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「재활공학 연구소 중기(‘17-’21) 발전방안」 수립 및 추진

① 산재장해인 직업재활 첨단 재활보조기구 연구 강화

- 재활공학연구소의 산재보험 연구기관*으로서의 기능 강화
 - * 외부 국책 연구용역 과제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 제고에 기여 하는 맞춤형 직무지원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 활성화
- 고기능 첨단 재활보조기구 연구·개발 및 급여화* 품목확대
 - * 손목관절 이단용 근전전동 의수 등 총 10건을 상용화하여,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 개정(안)에 신규 수가로 반영 추진



② 직무지원 재활보조기구 공급 확대 및 직업복귀 지원 역할 강화

- 직업훈련과정 산재장해인과 같은 잠재적 직무복귀 대상자를 포함한, 직무 지원 재활보조기구 지원 대상자 확대
- 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-재활공학연구소의 업무 연계성 강화 및 ‘산재장해인 의료·직업재활 프로그램’ 제공

③ 첨단 재활의료장비 연구·개발을 통한 직영병원 의료재활기술 선진 과학화

- 4차 산업혁명 기술*연구의 선제적 투자를 통한 산재병원의 의료재활경쟁력 강화 및 첨단기술의 조기 확보를 통한 연구소 수익구조 다변화
 - * 인공지능, 빅데이터, 재활로봇 기술을 활용한 산재환자 진단/평가 및 맞춤형 스마트 재활치료 의료환경 구현

요청자료 1. 외부용역 내역

□ '16년 외부 국책연구과제는 13건 수행

- 정규직 연구원은 석박사 이상, 위촉연구원은 석학사 이하로 운용하고
- 정규직 연구원은 자체 및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책 연구과제 수행 지원을 위하여 위촉연구원을 채용하여 운용

< '16년 외부 국책연구과제명 연구기간 현황 >

주무부처	연구과제명	총 연구기간
문화체육관광부	체어형 모노스키 및 충격 흡수형 모듈 기술 개발	2012.11.01~2016.01.31
산업자원통상부	고령자의 통합적 케어를 위한 스마트 전동침대 개발	2013.06.01~2016.05.31
산업자원통상부	근전전동의수 손가락 핵심부품(모터+감속기+링크)과 고탄성 외피소재 개발	2013.09.01~2016.08.31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	장애인 및 고령친화용 의료기기 표준화 및 시험환경 구축	2014.06.01~2017.05.31
산업통상자원부	하지기능회복 및 보조를 위한 스마트 근골격 인공대체기기 기술개발	2014.06.01~2018.05.31
보건복지부	초경량 folding형 전동휠체어 매커니즘 개발	2014.06.01~2017.04.30
보건복지부	노인 장애인을 위한 근력보조 휠체어 개발	2014.09.15~2017.09.14
미래창조과학부	고령층을 위한 무구속/무자각 스마트 휠체어 기술 개발	2014.10.01~2017.09.30
문화체육관광부	생활 스포츠에 필요한 스포츠기어의 설계 변수 도출 및 스포츠 재활훈련 프로토콜 개발	2014.09.01~2017.08.31
식품의약품안전처	휠체어및의료용스쿠터의안전성확보를위한평가기술개발	2015.12.18~2016.11.17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	장애인·노인 보조기구 표준 부합화 KS 제·개정 연구	2016.03.01~2016.11.30
식품의약품안전처	ISO/TC173/SC1·2·6산업 표준개발등활성화지원	2016.05.30~2016.12.10
미래창조과학부	작업자 및 사회적약자 맞춤형 근골격 안전시스템 구현을 위한 복합 3D 프린팅 활용 창의 기술 개발	2016.07.01~2019.06.30

요청자료 2. 위촉연구원 보수, 근로계약 형태

① 위촉연구원 운용 현황

- '17년 4월말 현재 계약직 형태로 위촉연구원 15명 운용 중

② 위촉연구원 계약 형태

- 외부 국책과제는 2~4년의 장기과제임에 따라 회계연도에 맞춰 연간단위로 계약 하되, 연구개시년도 및 종료연도는 각각 연구개시일 및 종료일에 맞춰 계약

③ 위촉연구원 평균 계약(근속) 기간 및 평균 보수

- '17년 4월말 기준 위촉연구원 15명 평균 근속연수는 3.7년
- '17년 4월말 기준 위촉연구원 평균 보수는 연간 3,100만원 수준
 - * 위촉연구원 보수는 재활공학연구소 “연구지원직 보수운영기준”에 따라 정규직 각 4급~6급 1호봉 상당으로 산정
 - * 석사급 위촉연구원은 4급 상당, 학사급 이하 위촉연구원은 5급 이하 상당으로 산정

④ 국책 연구과제 수행건수

- '14년 18건, '15년 16건, '16년 13건 수행

⑤ 업무 내용

- 위촉연구원별로 계약내용에 따라 국책연구과제 수행 지원
 - * 정규직 연구원은 석박사 이상, 위촉연구원은 석학사 이하로 운용하고 있으며 위촉연구원은 외부연구과제 수행 지원
 - * 위촉연구원 계약서 별첨 참고

< '17년 국책과제별 연구기간 및 수행인력 현황>

연구과제명	수행인력	총 과제연구기간
고령층을 위한 무구속/무자각 스마트 휠체어 기술개발(미래창조과학부)	3	2014.10.01-2017.09.30
하지기능회복 및 보조를 위한 스마트 근골격 인공대체기기 기술개발(산업통상자원부)	7	2014.06.01-2018.05.31
노인.장애인을 위한 근력보조 휠체어 개발(보건복지부)	1	2014.09.15-2017.09.14
작업자 및 사회적약자 맞춤형 근골격 안전시스템 구현을 위한 복합 3D프린팅 활용 창의기술 개발(미래창조과학부)	2	2016.07.01-2019.06.30
생활스포츠에 필요한 스포츠기어의 설계변수 도출 및 스포츠재활훈련 프로토콜 개발(문화체육관광부)	1	2014.09.01-2017.08.31
장애인및고령친화용의료기기표준화시험환경 구축(산업통상자원부)	1	2014.06.01-2017.05.31

[별첨] 위촉연구원 근로계약서 사본 1부

근로계약서 [위촉연구원]

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를 “사용자”라 하고, 위촉연구원 “△△△”를 “근로자”라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.

1. 직군/직렬 : 연구지원직/위촉연구원

2. 계약기간 : ① 계약기간은 : 2017년 01월 01일 ~ 2017년 05월 31일 까지로 한다.

※ 다만 용역연구사업의 특성상, 지원기관(부처)이 부득이한 사유로 “사용자”에게 사업의 중단을 통고하는 경우와 이에 따라 “사용자”와 “근로자”의 합의시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② “사용자”는 “근로자”가 「특정업무직관리세칙」 제24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. 또한, “근로자”는 “사용자”로부터 재계약 요구가 없을 시는 계약이 만료된 것을 인지하며,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3. 수행업무 : 수행 연구과제 세부 내역

연구과제명	지원기관	수행업무	참여율	과제별 계약기간
장애인 및 고령친화용 의료기기 표준화 시험환경 구축	산업통상자원부	연구보조	100%	2017.01.01. ~ 2017.05.31.

4. 보수

- “근로자”의 보수는 근로복지공단 “보수규정” 및 재활공학연구소 “연구지원직 보수운영기준”에 따라 지급하며, 세부 산출금액은 별도 보수산출조서에 의한다.
- “근로자”는 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”의 정한 바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는다.

5. 복무사항

- “근로자”는 주어진 업무에 최대한 노력과 성의를 다하여야 하며,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“복무규정” 등에 따른다.
- “근로자”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하고자 하는 날의 15일전까지 사직서를 “사용자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6. 규정 준수

- “근로자”는 기간 중 고용계약 및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“사용자”가 관련 규정에 따라 “근로자”에게 계약해지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- 연차유급휴가는 “근로기준법” 및 “복무규정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.
- “사용자”는 “근로자”에게 출장을 명령할 때에는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 기타 고용관련 업무의 성격상 연장근무, 격일근무 등의 근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순응한다.

7. 겸직제한 : “근로자”는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이사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8. 손해배상 : “근로자”가 계약기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“사용자”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9. 기타사항

-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공단의 「무기계약근로자등 특정업무직관리세칙」 및 공단 관련규정에 의한다.
-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,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.

계약체결일자 : 2016년 12월 일

(사용자)

주 소 : 인천 부평구 경인로 10번길 26

명 칭 :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

대 표 : 소 장 문 무 성 (인)

(근로자)

주 소 :

성 명 :

(인)